



의안번호	제 1249호
의 결 년 월 일	2016. 2. . (제 회)

심
의
의
결
사
항

제3기(2015~2018)지역사회보장계획의
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(안)

제 출 자	광진구청장 김 기 동
제출년월일	2016. 2. .

기획공보과 심사필

제3기(2015~2018)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(안)

의안 번호	124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2. .
제 출 자 : 광진구청장

1. 제안(수립)이유

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①항
 -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②항
 -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(안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
 -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
 -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
 -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(11개) 및 세부사업(64개)
 -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·재정 지원계획
 -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

3. 관계법규

-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사회보장급여법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기 타 : 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,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